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(공시송달)공고 제 2023-100호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3. 12. 12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

1. 건 명: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 시행지침 4.중도해지
  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장O리	'95.01.03	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직권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처분	○ 청년내일채움공제 6회차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	○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 직권 중도해지 처분	폐문부재	인천 부평구 경인로902번길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3.12.12. ~ 2023.12.2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최예림(Tel. 052-228-19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